

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!

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선배 ·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□ 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민규 의원입니다.

지금부터 「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

- 디지털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비정형 노동자 증가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 노동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을 조정하고, 유사 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합하고 비상설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.

□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,

- 5년마다 수립하는 노동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·시행으로 시기를 변경하고,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
- 심의·자문 등 유사·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‘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’와 ‘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위원회’를 ‘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’로 통합하여 각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-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